

중 국

[판례 분석]

소프트웨어 공개 경로 취득의 입증과 합리적 사용 판단

2026. 09. 23.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가 오픈소스 등 공개 플랫폼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개 소스코드와 권리 소프트웨어 및 실제 사용한 분쟁 소프트웨어 사이의 동일성과 구체적인 취득경로가 입증되어야 함. 또한 연구·학습 목적의 합리적 사용을 주장하더라도 이용허가 조건, 이용자의 지위 및 기업 홈페이지에서의 실제 이용형태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적 이용의 성격이 판단됨.

1. 현황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무료 버전과 상용 버전 등 여러 버전으로 제공되고 일부 소스코드가 인터넷 저장소에서 공개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는 피고가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이 권리자가 보호를 주장하는 특정 버전과 동일하거나 대응하는지, 피고가 그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본문에서는 무료 버전과 상용 버전이 병존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업 홈페이지에 설치·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분쟁 사례를 통하여 상용 버전 고유 코드의 특징과 비교, 공개 소스코드 주장에 대한 입증 및 연구·학습 목적의 합리적 사용 항변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4)沪73民初3633号
	2심	(2025)沪民终651号
관할 법원	1심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
	2심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上海市高级人民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B 회사		1심: 피고	2심: 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A 회사가 자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B 회사가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B 회사의 공개 경로 취득 주장 및 합리적 사용 항변의 성립 여부 4. B 회사의 법적 책임		
	2심	1. B 회사가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판결 결과	1심	1. A 회사는 자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함. 2. B 회사는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3. B 회사의 공개 경로 취득 주장 및 합리적 사용 항변은 성립하지 않음. 4. B 회사는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1,200만원을 배상해야 함.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権法) 제5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计算机软件保护条例) 제23조 제4호, 제5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최종 판결일	2026년 3월 23일			

(1) 사건 개요

C 회사는 X 소프트웨어 V1.0의 저작권자로서 A 회사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이용·보급 및 이를 기초로 한 V2.0과 후속 버전의 개발 권한을 부여하였음. A 회사는 이에 따라 X 소프트웨어 V2.0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 X 소프트웨어 V2.0에는 무료 버전과 상용 버전이 있으며 이 중 상용 버전(이하 “사건 소프트웨어”라 함)은 무료 버전에 비해 추가 코드와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B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이하 “분쟁 소프트웨어”라 함)를 설치·사용하였음. A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분쟁 소프트웨어에 사건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소스코드 파일이 포함되어 있고 서명 표시가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A 회사는 B 회사가 이와 같은 분쟁 소프트웨어를 자사 홈페이지에 설치·사용하고 서명 표시를 변경한 행위가 사건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수정권·서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B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서 A 회사는 B 회사가 허가 없이 사건 소프트웨어 코드를 취득하여 기업 홈페이지에 설치·사용하고 일부 저작권 정보를 삭제하거나 서명 표시를 변경함으로써 복제권·수정권·서명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B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A 회사 측의 공식 공개 경로를 통하여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있었고 자신은 이를 연구·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상업적 개발·복제·판매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그 외에도 B 회사는 A 회사가 소스코드를 공개한 후 동일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 권리구제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본 안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B 회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B 회사의 공개 경로 취득 주장 및 합리적 사용 주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 ③ B 회사의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이용행위 존재 여부

B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보된 분쟁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사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비교한 결과 확보된 2,122개 파일 가운데 263개의 분쟁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파일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대응 파일과 동일하고, 그중 17개 파일은 X 소프트웨어의 상용 버전(즉 사건 소프트웨어)에만 존재하는 파일인 것으로 확인됨. 또한 B 회사 분쟁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는 A 회사의 명칭 및 상용 버전 고유 기능인 '보조 창업자 그룹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러한 소스코드의 내용과 대응 관계를 종합해보면 분쟁 소프트웨어가 A 회사의 사건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편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 회사가 사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편집한 행위는 A 회사가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보유한 복제권, 수정권 침해에 해당함.

아울러 정품 X 소프트웨어의 로그인 화면에는 기존 관리자의 서명 표시가 존재하는 반면 분쟁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B 회사 홈페이지의 로그인 화면에는 이와 다른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바 이에 의해 A 회사의 서명권 침해가 성립함.

2) 공개 경로 취득 주장 및 합리적 사용 항변 판단

① 1심 법원의 판단

B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2016년경 A 회사 측에 의해 오픈소스 저장소에 공개되었고 자신은 해당 공식 경로에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홈페이지에 설치한 뒤 공식계정 운영 방법을 연구·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또한 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다운로드·설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우선 A 회사가 사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오픈소스 저장소에 공개하였다는 B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유효한 증거가 부족함. 아울러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이용허가계약에는 비상업적 용도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허가를 받기 전에는 기업 홈페이지, 영리 목적 또는 실제 수익을 실현하는 홈페이지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사건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B 회사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B 회사는 분쟁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인 연구·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 회사가 시장경영주체이고 분쟁 소프트웨어를 자신에게 등록된 도메인에 업로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한 개인적 연구·학습을 위한 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B 회사의 합리적 사용 항변은 성립하지 않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2심에서 B 회사는 오픈소스 관련 주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A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스코드 다운로드 주소의 화면과 영상, X 소프트웨어 미리 저장소에 게시된 소스코드 화면과 영상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함. B 회사는 이를 통하여 사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A 회사 측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고 상용 버전의 고유 기능으로 지적된 '보조 창업자 그룹 관리' 기능도 공개된 소스코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B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공개 소스코드와 사건 소프트웨어 및 분쟁 소프트웨어 사이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자료만으로는 사건 소프트웨어 자체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B 회사가 실제로 분쟁 소프트웨어를 위 공개 경로에서 취득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 특히 B 회사는 분쟁 소프트웨어에 복제된 사건 소프트웨어 고유의 17개 코드 파일과 자신이 공식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한 소스코드의 대응 파일이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B 회사가 분쟁 소프트웨어를 위 공개 경로에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합리적 사용 항변에 대해서도 사건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만 기업 홈페이지, 영리 목적 또는 실제 수익을 실현하는 홈페이지 등에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B 회사가 시장경영주체로서 분쟁 소프트웨어를 자신에게 등록된 도메인에 업로드하여 기업 홈페이지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분쟁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연구·학습 목적의 합리적 사용으로 볼 수 없음.

3) 법적 책임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A 회사의 실제 손실, B 회사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사건 소프트웨어의 이용허가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사건 소프트웨어의 유형과 가치, 침해행위의 성격과 정황 및 B 회사의 주관적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함. 이와 함께 A 회사가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기초로 다수의 침해소송을 제기해 온 사정, 전자데이터 보존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수집 비용이 비교적 낮았던 점 및 대량

권리구제 방식에 따라 변호사 비용 역시 일정 부분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함. 이에 B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총 1,200위안으로 정함.

3. 판례분석

1) 상용 버전 특성과 소스코드 비교의 증명 기능

본문 판례에서는 분쟁 소프트웨어에서 사건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다수의 코드 파일이 확인된 것에 더하여 V2.0 상용 버전에만 존재하는 17개 코드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분쟁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버전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2심 법원도 위 17개 고유 코드 파일을 직접적인 근거로 분쟁 소프트웨어가 무료 버전이 아니라 사건 소프트웨어인 V2.0 상용 버전을 복제한 것이라고 판단함.

이 사건에서 263개의 대응 코드 파일은 사건 소프트웨어와 분쟁 소프트웨어 사이의 전체적인 코드 대응관계를 증명하였고 그중 상용 버전에만 존재하는 17개 파일은 그 대응관계가 구체적으로 V2.0 상용 버전에 관한 것임을 식별하는 것 보다 직접적인 표지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음. 즉, 다수의 코드가 서로 대응한다는 사실이 두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초가 되었다면 특정 버전에만 존재하는 고유 코드는 B 회사가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이 여러 버전 가운데 어느 버전에 기초하였는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였음.

특히 위 17개 고유 코드 파일은 침해 대상 프로그램의 버전을 특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B 회사가 주장한 공식 공개 경로의 사실적 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활용되었음. 2심 법원이 B 회사가 공식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한 코드와 위 17개 파일의 대응관계가 증명되었는지를 확인한 점을 보면 동일한 기술적 증거가 한편으로는 분쟁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특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가 주장한 프로그램의 출처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본 판례는 무료 버전과 상용 버전 등 여러 버전이 병존하는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다수의 대응 코드와 특정 버전의 고유 코드를 결합하여 비교하는 것이 침해 대상 프로그램을 특정하고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증명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2) 오픈소스 관련 주장에 요구된 동일성과 취득경로의 입증

본문 판례에서 B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A 회사 측의 공식 경로를 통하여 공개되어 있었고 자신도 그 경로에서 분쟁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B 회사가 제시한 공개 소스코드와 사건 소프트웨어 및 분쟁 소프트웨어 사이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B 회사가 실제 해당 공개 경로에서 분쟁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였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특히 분쟁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V2.0 상용 버전 고유의 17개 코드 파일과 B 회사가 공식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한 코드의 대응 파일이 동일하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음.

이러한 판단구조를 보면 B 회사가 제출한 공개 저장소나 소스코드 자료의 존재 자체와 그 자료가 이 사건에서 보호대상으로 특정된 V2.0 상용 버전에 관한 것인지 여부 및 B 회사가 실제

사용한 분쟁 소프트웨어를 해당 경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서로 구별되는 입증 대상이었음. 다시 말해 “공개자료의 존재 → 공개 코드와 사건 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사이의 동일성 → 실제 취득경로”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B 회사의 공식 공개 경로 취득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음.

따라서 본문 판례는 피고가 권리자 측의 오픈소스 또는 공식 공개 경로에서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공개 저장소나 소스코드 자료의 존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공개 코드가 권리자가 보호를 주장하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피고가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나아가 피고가 실제 그 경로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취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3) 기업 홈페이지 이용과 합리적 사용 항변의 한계

본문 판례에서 B 회사는 분쟁 소프트웨어를 공식계정 운영방법의 연구·학습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소프트웨어 개발·판매나 제3자에 대한 다운로드·설치 서비스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이용허가 계약에 따른 상업적 허가를 받기 전에는 기업 홈페이지, 영리 목적 또는 실제 수익을 실현하는 홈페이지 등에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B 회사가 시장경영주체로서 분쟁 소프트웨어를 자신에게 등록된 도메인에 업로드하여 기업 홈페이지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리적 사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러한 판단은 연구·학습이라는 주장만으로 이용의 성격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용을 제한한 이용허가 조건과 실제 기업 홈페이지에서의 이용형태를 함께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특히 법원은 B 회사가 개발·판매나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기보다 B 회사가 시장경영주체로서 자신의 등록 도메인에 분쟁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여 기업 홈페이지에 사용한 사실을 합리적 사용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음.

한편 B 회사의 공식 공개 경로 취득 주장과 합리적 사용 항변은 모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방어논리였으나 법원이 검토한 대상에는 차이가 있음. 전자의 경우 B 회사가 주장한 공개 코드가 사건 소프트웨어 및 분쟁 소프트웨어와 동일한지 여부 및 소프트웨어를 실제 어느 경로에서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되어 공개 코드와 사건 소프트웨어 및 분쟁 소프트웨어 사이의 동일성 및 실제 취득경로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음. 반면 합리적 사용 항변에서는 B 회사가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였는지가 문제되어 이용허가 조건과 기업 홈페이지에서의 실제 이용형태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음. 따라서 본 판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출처에 관한 주장과 해당 소프트웨어의 이용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다른 사실적 전제와 판단근거에 따라 검토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피고가 오픈소스 등 공개 플랫폼을 통한 취득 경로와 연구·학습 목적의 합리적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공개 소스코드와 권리자의 소프트

웨어 사이의 동일성, 실제 취득경로 및 구체적인 이용형태 등 주요 증명 사항과 그 판단 방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5)沪民终651号